

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   월   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사무중 ‘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’ 사무를 보조사업으로 전환 삭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국제통상과 소관 ‘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’를 삭제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##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국제통상과 소관 제4호를 삭제하고,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【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】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